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4. 4. 8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3.12.30.)에 따른 “지역교육청” 명칭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하여 통일하고자 함.

2. 개정근거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2128호, 2013.12.30, 일부개정)

3. 주요내용

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(안 제2조 및 제4조)
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생략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

- 「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다. 교육규제 : 신설·강화규제 해당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”을 “(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및 마목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④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⑤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⑥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자목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제6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⑦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⑧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국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본청과 <u>지역교육청</u>에 두는 국장·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<u>지역교육청</u>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국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----- <u>교육지원청</u>----- ----- <u>교육지원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<u>지역교육청</u> 하부조직의 설치 등) <u>지역교육청</u>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<u>지역교육청</u>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<u>교육지원청</u> 하부조직의 설치 등) <u>교육지원청</u> ----- ----- <u>교육지원청</u> -----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

<p>관계법령 및 참고자료</p>	<p>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p> <p>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 <개정 2013.12.30></p> <p>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30></p> <p>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30></p> <p>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30></p> <p>[제목개정 2013.12.30.]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